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33
----------	------------

발의년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국회에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일부개정법률안 뿐만 아니라 이를 확대하여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제정 법률안까지 포함하여 남북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 가. 건의안 제명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함.
- 나. 기존 일부개정법률안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규정한 보다 진일보한 남북관련 제정 법률안까지 포함하여 제·개정을 촉구하기 위함.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u>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u> <u>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u> <u>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u> <u>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u></p>	<p><u>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u> <u>활성화를 위한 남북관련 법률</u> <u>제·개정 촉구 건의안</u></p>
<p>1. 주 문</p> <p><u>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u> <u>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u> <u>의회’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u> <u>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u> <u>따른 ‘협의체의 장’을 포함하도록</u> <u>「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u> <u>「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u> <u>개정을 촉구함.</u></p>	<p>1. 주 문</p> <p><u>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u> <u>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확대가 기대</u> <u>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u> <u>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활</u> <u>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u> <u>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등 지방</u> <u>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u> <u>포함하는 남북관련 법률의 조속한</u> <u>제·개정을 촉구함.</u></p>
<p>2. 제안이유</p> <p>가. ~다. (생략)</p> <p>바.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u>일동은 헌법이 규정한 한반도의</u> <u>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u> <u>정부 및 해당기관이 「남북교류</u> <u>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u> <u>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u></p>	<p>2. 제안이유</p> <p>가. ~다. (원안과 같음)</p> <p>바.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u>일동은 헌법이 규정한 한반도의</u> <u>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u> <u>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u> <u>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방자</u> <u>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u></p>

<p>여 <u>‘남북관계발전위원회’</u>와 <u>‘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u> 위원으로 <u>「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u> 구성된 <u>‘협의체의 장’</u>을 포함하도록 할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함.</p> <p>3. 참고사항</p> <p>가. ~나. (생략)</p> <p>4. 이 송 처</p> <p>청와대, <u>국회</u>, 통일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의회</p>	<p>주체로서 <u>활동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u> <u>청와대, 국회, 정당과 정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함.</u></p> <p>3. 참고사항</p> <p>가. ~나. (원안과 같음)</p> <p>4. 이 송 처</p> <p>청와대, <u>국회</u>, <u>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u>, 통일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의회</p>
<p><u>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u>를 위한 <u>「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u> 및 <u>「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u> 개정 촉구 건의안</p> <p>우리 헌법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을 명시하고 있다.</p> <p>그리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경</p>	<p><u>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u>를 위한 <u>남북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u></p> <p>(원안과 같음)</p>

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통일교육 촉진 및 통일 역량의 결집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과 주민들 간의 이질성 극복 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1999년 1월 제주도의 감귤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듬해 강원도와 북한 간의 남북교류 합의서 체결, 2004년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도적 지원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남북한 공동체성 회복과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통일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도 중

양정부와 동반자적 관계가 아닌 지원자적 역할에 머물러 있어 법적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제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가 규정된 것 외에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논의되는 상황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여전히 불확실한 위상과 법·제도의 미비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

뤄지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초청 강연부터 지역행정에 관한 자치단체 간 협의회,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등 지방차원의 교류협력이 신뢰관계 구축과 행정통합, 상호이해 증진, 지역간 상생 발전을 통한 통일경제 기반 구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법적지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통일정책 전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남북관계 발전법」 제14조를 개정하여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정책에 관한 정

또한,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할 때,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

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자문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큰 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통일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포함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여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장’을 포함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

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 등은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통일정책 전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는 바이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  
동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방  
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남북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를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  
히 촉구하는 바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 1. 주 문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등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 포함하는 남북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제시한 국가적 사명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 확대와 통일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나. 1999년 제주도의 감귤 보내기 사업으로부터 출발한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통천역 열차 폭발사고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문화 분야의 인적교류 등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성의 회복과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해왔음.

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 이외에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 없음.

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이 본격화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 역시 변화가 필요함.

마. 특히 동·서·독 지방도시 간 행정협의회 운영, 자매결연 등이 활발했던 독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은 신뢰관계 구축과 행정통합, 상호이해 증진 등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은 통일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바.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이 규정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청와대, 국회, 정당과 정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기타사항 : 없음.

### 4. 이 송 처

청와대, 국회,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통일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우리 헌법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통일교육 촉진 및 통일 역량의 결집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과 주민들 간의 이질성 극복 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1999년 1월 제주도의 감귤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듬해 강원도와 북한 간의 남북교류 합의서 체결, 2004년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도적 지원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남북한 공동체성 회복과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통일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동반자적 관계가 아닌 지원자적 역할에 머물러 있어 법적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제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가 규정된 것 외에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논의되는 상황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은 여전히 불확실한 위상과 법·제도의 미비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뤄지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초청 강연부터 지역행정에 관한 자치단체 간 협의회,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등 지방 차원의 교류협력이 신뢰관계 구축과 행정통합, 상호이해 증진, 지역 간 상생 발전을 통한 통일경제 기반 구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법적지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통일정책 전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할 때,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 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 등은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남북 관계의 진전과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 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통일정책 전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의원 일동